

법과대학

법학과 ·

법학과

Department of Law

🎓 교육목표

법학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역사가 묻어있는 고전적인 학문이다. 동시에 법학은 사람과 사회와 국가의 현실적 존재방식과 상호관계를 규율하기도 하고 이들이 지향해야할 존재방식과 상호관계를 규명하기도 하는 현실 지향적 미래지향적인 가치탐구의 학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학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이성적·철학적 성찰과 탐구의 자세와 인간의 사회·국가생활에 관련된 모든 학문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대학원 법학과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연속적·통합적 운영 과정에서 법철학적·법사상사적·법사회학적 연구, 일반법과 특별법에 대한 해석학적 연구, 법이론을 통한 판례분석 연구, 비교법적 연구, 세부 법영역 간 및 다른 학문 영역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독창적인 연구능력의 배양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실문제 해결과 선진 법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하며 정보산업시대·세계화시대를 주도하는 우수한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진로 및 취업분야

학문연구과제인 대학원과정은 대학원생들에게 법학적인 사고능력 뿐만 아니라 학문으로서 법학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이후 각종 국책연구소 혹은 민간연구소에 연구자로 진출하거나 정규 대학에 교수로서 취업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대학원에서 습득하게 되는 법학적인 사고능력은 일반기업체 법무팀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에서 배우게 되는 법의 사람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규율방식의 깊이 있는 이해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정치적인 영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이후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정치인으로 진출하는데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자신의 연구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됨으로 현재 이미 공직이나 민간 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더하여진 능력에 따라, 승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각자의 영역에서 법학과 관련된 업적을 더 수월하게 그리고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다.

🎓 과정별 개설전공

■ 석사학위/석·박사통합/박사학위 과정 : 기초법 전공, 공법 전공, 민사법 전공, 형사법 전공, 상사법 전공, 국제법 전공, 사회법 전공, 범죄수사법 전공, 현대사회특별법 전공, 부동산법 전공,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전공, 국가정책안보법 전공.

학과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일반대학원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원 법학과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공분야) 법학과에는 석사·석박사통합·박사과정 공통으로 다음 각호의 전공과정을 개설한다.

1. 기초법 전공
2. 공법 전공[헌법 트랙, 행정법 트랙]
3. 민사법 전공
4. 형사법 전공
5. 상사법 전공[상법 트랙, 국제금융법 트랙]
6. 국제법 전공
7. 사회법 전공
8. 범죄수사법 전공
9. 현대사회특별법 전공[과학기술법 트랙, 지적재산권법 트랙]
10. 부동산법 전공
11.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전공
12. 국가정책·안보법 전공

제3조(전형방법)

- ① 입학시험은 학과장과 학과장이 추천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전임교수로 구성된 법학과 입학시험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②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구술시험, 필답고사로 시행한다. 다만, 필답고사는 면제할 수 있다.

제2장 선수과목

제4조(선수과목) 현 학위과정의 이전 학위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내국인 및 이전 학위과정에서의 법학 전공이수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인은 다음과 같이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① 석사과정 내국인은 학부강좌 중 헌법, 민법분야 각각 3학점씩 6학점을 포함하여, 형법, 상법, 국제관계법, 국가정책·안보법, 현대사회특별법 분야 가운데 3학점 이상, 총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인은 석사과정 개설과목 중 한국법의이해 I, II 6학점, 학부강좌 중 헌법, 민법, 형법, 상법, 국제관계법, 국가정책·안보법, 현대사회특별법 분야 가운데 3학점 이상, 총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개설과목 중 주 전공분야 과목 6학점과 다른 전공분야 과목 3학점을 포함하여 총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2013학년도 신입학생부터는 석사과정 개설과목중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총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5조(선수과목 수강신청) 선수과목은 학과장과 논문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대체과목 인정) 선수과목 이수대상자가 직전 학위과정에서 동일 전공에 속하는 법률관련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선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3장 종합시험

제7조(응시자격)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가. 3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
 - 나. 학점을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평균평점이 3.0(B) 이상인 자
 - 다.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라. 단, 석사학위 논문 청구전까지 국내저명학술지(등재후보지 제외)에 논문 1편을 게재한 경우,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2. 박사학위과정

- 가. 학위논문 청구 전까지 국내저명학술지(등재후보지 제외)에 논문 2편 게재로 종합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 나. 단, 학술지 논문게재가 어려운 학생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통해 종합시험에 응시 및 합격할 수 있다.
- 다. 전항의 단서에 의해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4학기이상 등록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

로서 그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라.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8조(시험과목)

- ① 석·박사과정 종합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 아래 별표 참조
- ② 석사과정은 제1항의 시험과목 중에서 기초공통 1과목과 전공 1과목을 선택·응시하여야 한다.
- ③ 박사과정의 경우는 제1항의 시험과목 중에서 기초공통과목 1과목과 전공 2과목(주전공 2과목, 또는 주전공 1과목과 타전공 1과목)을 선택·응시한다.
- ④ 응시자의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기초공통과목은 전공과목으로 분류된다.

제9조(응시절차)

- ① 종합시험 응시과목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응시원서와 소정의 응시료를 제출·납부하여야 한다.
- ③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학위과정별로 요구되는 응시과목을 학기별로 나누어 응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은 소정의 기간 내에 시행한다.

제11조(출제위원 선정)

- ① 개별 시험과목의 출제위원은 응시자의 전공을 고려하여 학과장이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한다.
- ② 출제위원은 각 학위과정별로 1과목 출제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2과목을 초과하여 출제할 수는 없다.

제12조(시험 형식과 시간)

- ① 시험은 논술형으로 출제한다.
- ② 시험시간은 과목당 80분으로 한다.

제13조(채점) 채점은 출제위원이 지정된 장소에서 행한다.

제14조(배점 및 합격기준)

- ① 종합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 ② 각 과목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15조(관련 서류 보관) 종합시험 후 문제지, 답안지 및 관련 서류는 법과대학 학사운영실에서 2년간 보관한다.

제4장 수료 및 졸업

제16조(수료)

- ①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4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로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석사과정에 신입학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업연한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1. 본 대학원 학점 선취득제도에 의해 대학원 전공과목으로 6학점이상을 인정받은 자
 2. 입학전 국내의 일반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6학점이상을 인정받은 자
- ③ 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④ 선수과목이수 대상자가 수료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료요건 외에 선수과목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제17조(학위논문 제출자격)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가.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
(조기수료 해당자는 3학기 이상)
 - 나.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 다. 선수과목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 라.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 마.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 바.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사.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 판정을 받은 자
 - 아.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박사학위과정
 - 가. 4학기 이상 정규등록(예정)을 필한 자(석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 나.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
 - 다. 수료자로서 연구등록을 필한 자
 - 라. 선수과목을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예정)한 자(해당자에 한함)

- 마. 논문 지도교수 위촉한 자
- 바.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자
- 사.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 아. 연구업적 기준을 충족한 자

(1) 2013년도 이전 입학생 : 본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100%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서 100%를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 연구논문 실적인정비율

- ① 단독연구 : 100 %
- ② 공동연구 :
지도교수와 공동연구 - 100%
기타 2인 공동연구 - 70%
3인 이상 공동연구 - 50%

(2) 2014년도 이후 입학생 : KCI등재지 1건 이상 (계재확정 인정)

※ 종합시험을 국내외저명학술지 (등재후보지 제외)에 논문 게재하여 합격 인정 받은 자는 연구 논문 실적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 있음

자. 청구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 판정을 받은 자

차.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참고>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5조

제18조(논문지도교수)

- ① 학생은 논문지도를 받기 위하여 전공분야의 전임 교원 중에서 지도교수 1인을 위촉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도교수 선정은 2학기 이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43조

제19조(연구계획서 제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초록발표)

- ① 논문의 초록 또는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제16조(수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초록 또는 연구계획서발표는 지도교수 위촉 후 석사과정은 1학기,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의 지도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다. 지도교수 위촉 후 지도교수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③ 초록발표의 합격여부는 학과장이 논문지도교수 및 참여 전임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 또는 “부”로 판정한다.

제21조(학위논문 심사위원)

- ① 석사과정의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
- ② 박사과정의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으로 하되 내부인사는 3인이내, 외부인사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본교 퇴임교원과 현직 비전임교원(외래강사 포함)은 내부인사로 간주한다.
- ③ 심사위원 위촉은 학과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장이 위촉한다.

제22조(학위논문 심사)

- ① 석사과정의 학위논문 심사는 1회 이상으로 한다.
- ② 박사과정의 학위논문 본심사는 3회 이상(예비심사 제외)으로 한다.
- ③ 박사과정은 학위논문 심사 전에 예비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예비심사는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서면심사로 진행하며, “수”, “우”, “미”, “양”, “가”로 평가한다. 예비심사결과 심사위원 5인 중 4인이상이 “우”이상 판정한 경우 본심사에 회부한다.

제23조(학위논문 심사합격)

- ①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별로 “가” 또는 “부”로 평가하며, “가”판정은 3등급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가”를 받은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 ② 박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4/5위원으로부터 각각 “가”판정과 “80점이상(100점만점)”판정을 받은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5장 기타

제24조(기타) 이 내규에 없는 사항은 법과대학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 칙(2008. 9. 신설)

④항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내규는 2008년 1학기 이전에 입학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부 칙(2009. 2. 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조항) 제2조 및 제8조 ③항

부 칙(2010. 4. 2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조항) 제2조 및 제8조 ①항

부 칙(2012. 2. 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조항) 제7조 ①항 및 제8조 ②항, ③항,

부 칙(2013. 3. 0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조항) 제3조 제목, 제4조 제목 및 ②항, 제16조 ①항, 제18조 ②항, 제19조, 제21조 ②항 ③항, 제22조 ②, ③항, 제23조 ①항, ②항

부 칙(2015. 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조항) 제4조, 제4조 ①항, ②항, ③항

부 칙(2017.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조항) 제2조, 제4조 ①항, ②항, 제7조 ①항 1호, 2호, 제8조 ①항, 제17조

■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 및 졸업요건

		수료	졸업	비고
석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학점 이상 취득 • 평점평균 3.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요건 외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석사학위논문 합격을 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연한 단축 요건은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13조 참조
	선수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민법 분야에서 각 3학점, 형법, 상법, 국제관계법, 국가정책·안보법, 현대사회특별법 분야에서 3학점으로 총 9학점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위의 졸업요건 외 선수대상자 이수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의 경우 법학과 내규로 정함
석박통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학점 이상 취득 • 평점평균 3.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요건 외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박사학위논문 합격을 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지도학점 6학점 포함
	선수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과정 선수대상자 요건을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위의 졸업요건 외 선수대상자 이수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함. 	-
박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학점 이상 취득 • 평점평균 3.0 이상 • 조기수료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요건 외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박사학위논문 합격을 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과정은 박사학위논문 제출 시 학칙 및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한 연구논문실적을 요함.
	선수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석사과정 개설 선수과목 중 총 9학점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위의 졸업요건 외 선수대상자 이수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까지는 석사과정 전공과목 6학점, 전공 외 과목 3학점의 총 9학점 취득

☞ 대학원 선수과목 및 종합시험

■ **선수과목** : 3과목 (9학점) 이상 이수 및 이수한 선수과목들의 총 평점평균이 3.0이상

1. 석사과정 내국인은 학부강좌 중 헌법, 민법분야 각각 3학점씩 6학점을 포함하여, 형법, 상법, 국제관계법, 국가정책·안보법, 현대사회특별법 분야 가운데 3학점 이상, 총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외국인은 석사과정 개설과목 중 한국법의이해 I, II 6학점, 학부강좌 중 헌법, 민법, 형법, 상법, 국제관계법, 국가정책·안보법, 현대사회특별법 분야 가운데 3학점 이상, 총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3.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개설과목 중 주 전공분야 과목 6학점과 다른 전공분야 과목 3학점을 포함하여 총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2013학년도 신입학생부터는 석사과정 개설과목중 전공분야와 관계없이 총 9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종합시험과목표

기초공통과목	헌법총론, 민법총칙, 형법총론, 상법총칙, 행정법기본법리, 조약법, 민사소송법1, 노동법, 범죄수사법, 인터넷과 법, 부동산계약법, 스포츠법, 금융법, 법철학, 지적재산권법, 국가정보법연구, 북한인권법연구, 국제형사법연구
전공과목	<p>[기초법 전공] 법사상사, 법학방법론, 법사회학, 법제사</p> <p>[공법 전공] 기본권, 통치권력1(선거와 국회), 통치권력2(정부와 법원), 헌법소송,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특별행정법, 환경법</p> <p>[민사법 전공] 물권법, 담보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p> <p>[형사법 전공]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 2, 형사정책</p> <p>[상사법 전공] 상행위법, 회사법1, 회사법2, 어음수표법, 보험해상법, 국제금융법, 은행법, 자본시장법</p> <p>[국제법 전공] 국제기구법, 국제인권법, 국제해양법, 국제경제법</p> <p>[사회법 전공] 개별적 노동관계법, 집단적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p> <p>[범죄수사법 전공] 범죄피해자학, 수사심리학, 범죄 프로파일링, 정신감정학</p> <p>[현대사회특별법전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법 트랙: 개인정보법제, 정보공개법제, 소비자보호법제, 전자매체와 광고법제 - 지적재산권법트랙: 신지적재산권법,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국제지적재산권법 <p>[부동산법 전공]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중개법, 부동산사법, 부동산공법</p> <p>[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전공] 엔터테인먼트법, 언론정보법, 문화국가론, 스포츠계약법</p> <p>[국가정책·안보법 전공] 대테러법 연구, 안보형사법 연구, 사이버안전법연구, NGO와 법</p>

- ① 석사과정의 경우 석사학위 논문 청구전까지 국내저명학술지(등재후보지 제외)에 주저자로 논문 1편을 게재시, 종합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박사과정의 경우 종합시험을 부과하는 대신, 학위논문 청구전까지 국내저명학술지(등재후보지 제외)에 주저자로 논문2편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학술지 논문게재가 어려운 학생은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 교수의 승인을 통해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② 석사과정은 상기의 종합시험과목표 시험과목 중에서 기초공통 1과목과 전공 1과목을 선택·응시하여야 한다.
- ③ 박사과정의 경우는 상기의 종합시험과목표 시험과목 중에서 기초공통과목 1과목과 전공 2과목(주전공 2과목 또는 주전공 1과목과 타전공 1과목)을 선택·응시한다.
- ④ 응시자의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기초공통과목은 전공과목으로 분류된다.

교수소개

연기영				
전공분야	민사법			
세부연구분야	재산법, 제조물책임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의료관계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Georg-August Univ. Goettingen(독)	법학과	법학박사	
담당과목	민법총칙	채권법	멘토	주니어세미나, 국제금융법
대표저서	스포츠법학연구, 역락, 2013.			
	과학기술법제(공저), 보명 BOOKS, 2009.			
대표논문	로스쿨 민법총칙(공저), 청림출판, 2006, 로스쿨 물권법(공저), 청림출판, 2006, 로스쿨 계약법(공저), 청림출판, 2006, 로스쿨 불법행위법(공저), 청림출판, 2007, 로스쿨 가족법(공저), 청림출판, 2008.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손해배상의 과제, 법학논총 제31집 제1호, 615-644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3.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ports Arbitration Bodies and Challenges of Legislative Policy for Reestablishment of Sports Arbitration Agency in Korea" (English),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ol.23 No.3, 2013. 09, pp.101~126, The Korean Association of Arbitration Studies, Seoul, Korea.			
	Das Koreanische Produkthaftungsgesetz(KPHG)(German) in : Medizin und Haftung(Festschrift Fuer Erwin Deutsch zum 80. Geburtstag) Springer Verlag: Berlin Heidelberg, 2009. SS. 975~996.			

이상영				
전공분야	민사법			
세부연구분야	재산법, 파산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Freiburg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당과목	민법총칙	민법사례연구	채권법	물권법
대표저서	민법총칙 기본판례 100선, 현암사, 1998			
	외국파산법, 동국대출판부, 2007			
대표논문	Die Sicherung durch Grundpfandrechte, Centaurus-Verlagsgesellschaft Reihe Rechtswissenschaft Band 100, Freiburg, 1990			
	처분수권의 개념과 요건 -독일민법상 처분수권의 기초이론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제19권 4호, 2012.			
	보증계약상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민사법학 46권, 2009			

김선정				
전공분야	상사법			
세부연구분야	회사법, 보험법, 금융법, 경제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당과목	상법총칙	회사법	해상보험법	국제거래법
대표저서	금융법,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주식회사법대계, 공저, 법문사, 2013.			
대표논문	A rough sketch on the Metal-Tech Ltd. v. Republic of Uzbekistan(International Conference of KATCI. 23 June 2015)			
	韓國における保険關連法の制定・改正狀況と今後の課題, 『保險學雜誌』 第626号, 日本保險學會(2014. 9. 30).			
	고지의무이행자에 대한 계약전발명부담보,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제27권 4호, 한국상사판례학회(2014. 12. 31)			

이 명 목			
전 공 분 야	형법, 법철학		
세부연구분야	범죄론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수료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답 당 과 목	형법		법철학
대 표 저 서	조선시대형사제도, 2006, 동국대 출판부		
	로스쿨 형법판례1, 2009, 탐북스 ; 로스쿨 형법판례II, 2010, 인북스		
대 표 논 문	로스쿨 형법헌재판례 1, 2009, 탐북스 ; 로스쿨 형법총론판례, 2011, 인북스 , 형법총론, 2012, 인북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의 배심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 형법에서의 인과관계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2조'와 법의 지배원리에 의한 정당화사유의 역사성과 근거, 미국헌법연구 제25권 3호 2014, 사단법인 미국헌법 학회		

정 용 상			
전 공 분 야	상사법		
세부연구분야	회사법		
학사학위과정	건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건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건국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답 당 과 목	상법총칙	회사법1	회사법2
			유가증권법
대 표 저 서	M&A법상의 제문제, PUFS, 2003, 단독		
	중국회사법론, PUFS, 2003, 단독		
대 표 논 문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감사제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7, 7인공저		
	중국법상 국유기업의 회사화와 주식회사의 설립, 비교사법 제10권 제2호(2003. 9), 한국비교사법학회		
	인도회사법상 이사와 이사회제도, 재산법연구 제28권 제4호(2012. 2), 한국재산법학회		
	아세안국가 회사법상 감사제도, 상사판례연구 제27집 제4권(2014. 12), 한국상사판례학회		

최 정 일			
전 공 분 야	행정법		
세부연구분야	행정법, 법제실무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정치학학사
석사학위과정	독일 본(Bonn)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박사
답 당 과 목	행정법1	행정법2	행정구제법
			입법학
대 표 저 서	행정법의 정석(행정법 I), 박영사, 2009 / 행정법의 정석(행정법 II), 박영사, 2009		
	행정법개론, 디비북스, 2011		
대 표 논 문	법학개론, 학림출판사, 2015		
	독일과 미국에서의 의회에 의한 위임입법의 직접적통제 (2008년 8월,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독일과 한국에서의 비례원칙에 의한 행정작용의 통제 (2009년 6월,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37집 4호)		
	4대강 유역개발사업의 법적 문제 - 손실보상문제를 중심으로 - (2009년 8월, 한국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45집)		

강 동 옥			
전 공 분 야	형사법		
세부연구분야	형법/형사소송법/형사정책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답 당 과 목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형법/형사소송법연습
대 표 저 서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에 따른 불심검문 - 이론과 실무		
	형사절차와 헌법소송 / 아동학대(공저)		
	형사소송법강의		
대 표 논 문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피해자국선번호사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여성·아동 폭력 보도와 관련한 언론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연구		

박 민 영			
전 공 분 야	행정법		
세부연구분야	행정소송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공법전공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공법전공	법학박사
담당 과 목	행정법1	행정법2	행정구제법
대 표 저 서	도로하자론		
대 표 논 문	미연방대법원 기본권 판례연구		
	집단소송론		
	의료기본권론		

한 희 원			
전 공 분 야	국가정책·안보법		
세부연구분야	국가정보법, 국제형사법, 국제인권법, 국제기구법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IUPUI)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ack	Master of Law
박사학위과정	호서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당 과 목	국제인권법	국가정보법	국제기구법
대 표 저 서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 -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국가정보학 원론		
	국제기구법 총론, 국제인권법 총론 신법학입문, 정의로의 산책(정의론: On Justice)		
대 표 논 문	Newly arising issues on the limitation of intervention law and refugees unde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Atoms for Peace: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 No. 4, 2007).		
	The Impact of Terrorism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 hints from the Legal Cases and the Terrorist Surveillance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중앙법학, 2008). 국제기구의 법인격 주체성과 권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중앙법학, 2009).		

이 훈 중			
전 공 분 야	상사법		
세부연구분야	회사법, 자본시장법, 유가증권법		
학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한양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당 과 목	상법총론	회사법	유가증권법
대 표 저 서	이야기로 듣는 상법, 글누림, 2007.		
	디지털사업에 관한 법 이야기, 글누림, 2005.		
대 표 논 문	회사지배권의 변동과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한 판례평석, 한양법학 제22집.		
	전문직법인의 형태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5집 제1호. 어음행위와 제삼자의 주관적 요건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17집.		

변 증 필			
전 공 분 야	형사법, 법철학		
세부연구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담당 과 목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대 표 저 서	형법해석과 논증		
	순수법학/ 법적 논증이론(역서)		
	회복적 정의의 비판적 쟁점(역서)		
대 표 논 문	형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성범죄관련 입법동향과 형법의 정향(定向) 법규칙과 법원리 구별의 유용성과 한계		

조 성 해			
전 공 분 야	노동법, 사회보장법		
세부연구분야	개별적 노동관계법, 집단적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학사학위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독일 Bonn대학교	법학과 노동법/사회보장법 전공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Bonn대학교	법학과 노동법/사회보장법 전공	법학박사
답 당 과 목	노동법	노동분쟁법	사회보장법 소비자법
대 표 저 서	법학입문(개정판), 도서출판 두남, 2002 외국의 근로계약법제 도입과정 및 내용분석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2009. 11, 필수유지업무와 노동법, 한국학술정보, 2010		
대 표 논 문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남용과 개선방안, 노동법학 제36호, 2010. 12. 15. 사내하도급과 근로관계, 노동법학 제39호, 2011. 9. 15.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시 실질적 사용자의 판단, 노동정책연구, 2011. 9. 30.		

김 상 경			
전 공 분 야	헌법		
세부연구분야	기본권, 헌법재판, 스포츠법, 개인정보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답 당 과 목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헌법소송법
대 표 저 서	ADR의 실제와 이론 II 독일지방정부론 주권론의 뿌리를 찾아서		
대 표 논 문	독일의 의료정보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계약법에 관한 연구 한국의 정당구조와 정당개혁		

최 봉 석			
전 공 분 야	행정법		
세부연구분야	지방자치법, 환경법		
학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Hannover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답 당 과 목	행정법1	행정법2	행정구제법 환경법
대 표 저 서	「행정법총론」, 한국법제연구원, 2010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한국법제연구원, 2008 「환경법」, 청목출판사, 2010		
대 표 논 문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무에 관한 법제 진단”, 지방자치법연구, 2011 “분권헌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과제-지방의회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10 “폐기물의 에너지원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2009		

최 창 렬			
전 공 분 야	민사법		
세부연구분야	재산법		
학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답 당 과 목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대 표 저 서	「위약금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계약의 서식분쟁(Battle of forms)에 관한 소고”, 국제거래법연구 제20권 제2호, 국제거래법학회, 2011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귀속”, 성균관법학 제17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 “계약준수의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재산법학회, 2011		

박 병 식			
전 공 분 야	형사법, 경찰법		
세부연구분야	형법, 형사정책, 범죄수사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일본 메이지대학교	형사법 전공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일본 메이지대학교	형사법 전공	법학박사
답 당 과 목	형법총론1	형법총론2	형법각론, 형사정책
대 표 저 서	소년사법과 국제준칙(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시스템(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심리학이 잡은 범인(오픈하우스, 2009)		
대 표 논 문	한국 갱생보호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아시아교정포럼, 2011 Death Penalty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Society of Criminology, 201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인터넷열람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8		

김 도 현			
전 공 분 야	기초법		
세부연구분야	법사회학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답 당 과 목	법사회학		서양법제사
대 표 저 서	법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소송과 법조 법과 사회		
대 표 논 문	사회학적 법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 법관의 커리어 패턴 분석 민사소송의 변호사 대리를 현황과 추이		

오 미 영			
전 공 분 야	국제법		
세부연구분야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학사학위과정	神戸大学	法律学科	法学 학사
석사학위과정	神戸大学	法学研究科	法学 석사
박사학위과정	神戸大学	法学研究科	法学 박사
답 당 과 목	국제법총론		국제법각론
대 표 저 서	『외국군의 법적 지위』, 법원사, 2003.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2009.		
대 표 논 문	평화유지군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제형사법의 적용과 관련한 관할권적 쟁점: 현행체제와 한계, 『평화학연구』, 2008. 4. 국제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일본의 법체계와 경험, 『국제법평론회』, 2008. 10. 관타나모 수감자에 대한 법적 고찰, 『평화학연구』, 2009. 12.		

김 경 제			
전 공 분 야	헌법		
세부연구분야	언론·출판·방송, 헌법입증방법론		
학사학위과정	한국의국어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석사학위과정	부산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Born 대학교	Rechtswissenschaftliche Fakultät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부산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독일 Born 대학교	Rechtswissenschaftliche Fakultät	법학박사
답 당 과 목	헌법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헌법재판소법
대 표 논 문	헌법의 침해, 공법연구, 2011. 6., 41면 이하. 사형형벌 합헌결정을 통하여 본 헌법재판의 논증방법, 공법학연구, 2010. 5 간통처벌규정에 대한 합헌결정이 가지는 헌법적 문제점, 헌법학연구, 2009. 6.		

서 계 원			
전 공 분 야	지적재산권법		
세부연구분야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의생명공학과 법, 정보법, 과학기술과 법		
학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법과대학	이학사/법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답 당 과 목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공학법제
대 표 저 서	1. 『특허법 주해』(공저), 박영사, 2010 2. 『Entertainment Law』(공저), 박영사, 2007 3. 『생명공학법제』,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대 표 논 문	1. 徐啓源, “著作權 制度의 自生的 起源에 관한 研究 -中國과 우리나라의 出版文化를 中心으로-”, 『季刊 著作權』第24卷 第2號, 韓國著作權委員會, pp.83-112, 2011. 2. 徐啓源, “公正利用 法理(fair use)의 國內法 編入에 대한 實證의 研究”, 『法學研究』第51卷 第4號, 釜山大學校 法學研究所, pp.159-192, 2010. 3. 徐啓源·李海燕, “中国法律关于商标与商号权之间冲突的立法现状与解决途径”(中國法에서 商標權과 商號權의 衝突 및 解決方案), 『知識財産研究』第4卷 第1号, 韓國知識財産研究院, pp.27-77, 2009.		

이 용 증			
전 공 분 야	국제법		
세부연구분야	국제기구법/국제분쟁해결		
학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Washington	정치학과	정치학사
석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정책학전공)
석사학위과정	University of Leiden	법학과	법학석사(LL.M.)
박사학위과정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법학과	법학박사(Dr.iur.)
답 당 과 목	국제법	국제협상법	국제법연습
대 표 저 서	Legal Issue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under the Armistice System(Kluwer: 2002) 한국외교의 자화상(이준출판사, 2009)		
대 표 논 문	Legal Analysis of the 2006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gainst North Korea's WMD Development (Fordham Int'l law Journal Vol. 31:1) Early Development of Modern International Law in East Asia: With Special Reference to China, Japan and Korea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Vol.4: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대일항전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대한국제법학회논총 제54권 제1호)		

임 규 첩			
전 공 분 야	과학기술법		
세부연구분야	개인정보법		
학사학위과정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학사
석사학위과정	독일 Trier 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독일 Trier 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답 당 과 목	개인정보법	과학기술법	
대 표 저 서	독일연방개인정보보호법률(번역) 21세기 인터넷 정책과 법 개인정보와 법		
대 표 논 문	호적법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가족의 헌법상 의미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률에 관한 비판적 고찰		

박 선 영			
전 공 분 야	헌법		
세부연구분야	헌법, 입법학, 언론법, 법여성학		
학사학위과정	이화여대	법학과	법학학사
석사학위과정	이화여대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학위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답 당 과 목	헌법	입법학	
대 표 저 서	『법학개론』, 동헌출판사, 2006. 『法女性學』, 法文社, 2003. 『言論情報法研究』 I~II, 法文社, 2002.		
대 표 논 문	“유럽인권보장체계의 아시아 계수를 위한 제언”, 유럽헌법연구 제14호, 유럽헌법학회, 2013. 12. “기본권 체계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제16호, 유럽헌법학회, 2014. 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통해 본 북한헌법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11.		

교과과정표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이수대상	원어강의	비고
LAW6001	법학방법론	3	3		석사		
LAW6011	비교법일반연구	3	3		석사		
LAW6012	법사회학일반연구	3	3		석사		
LAW6013	법인류학연구	3	3		석사		
LAW6016	법과정의론	3	3		석사		
LAW6017	한국법의이해 I	3	3		석사		외국인선수
LAW6018	한국법의이해 II	3	3		석사		외국인선수
LAW6019	법문서작성과인용법	3	3		석사		
LAW6030	헌법일반이론	3	3		석사		
LAW6031	비교헌법연구	3	3		석사		
LAW6032	기본권연구	3	3		석사		
LAW6035	국가조직연구	3	3		석사		
LAW6037	헌법재판연구	3	3		석사		
LAW6043	언론법연구	3	3		석사		
LAW6044	국가안보법연구	3	3		석사		
LAW6060	민법일반이론	3	3		석사		
LAW6065	법률행위론	3	3		석사		
LAW6067	계약론	3	3		석사		
LAW6070	이혼법론	3	3		석사		
LAW6073	물권법판례연구	3	3		석사		
LAW6074	채권법판례연구	3	3		석사		
LAW6079	비교민법연구	3	3		석사		
LAW6080	취득시효론	3	3		석사		
LAW6090	형법일반이론	3	3		석사		
LAW6091	범죄론	3	3		석사		
LAW6092	형벌론(보안처분론포함)	3	3		석사		
LAW6094	형법특수연구	3	3		석사		
LAW6097	형사소송법일반이론	3	3		석사		
LAW6101	형사정책론	3	3		석사		
LAW6120	상사법일반이론	3	3		석사		
LAW6122	상사법기본판례연구	3	3		석사		
LAW6123	상거래법기본연구	3	3		석사		
LAW6124	회사법기본연구	3	3		석사		
LAW6125	회사법판례연구	3	3		석사		
LAW6127	유가증권법기본연구	3	3		석사		
LAW6130	보험법연구	3	3		석사		
LAW6131	경제법기본연구	3	3		석사		
LAW6134	비교회사법연구	3	3		석사		
LAW6136	해상법연구	3	3		석사		
LAW6137	자본시장법연구	3	3		석사		
LAW6138	금융법연구	3	3		석사		
LAW6139	상법상외관이론연구	3	3		석사		
LAW6150	행정법일반이론	3	3		석사		
LAW6151	행정작용법연구	3	3		석사		
LAW6153	행정강제론	3	3		석사		
LAW6154	행정절차법연구	3	3		석사		
LAW6155	행정구제법연구	3	3		석사		
LAW6157	지방자치법연구	3	3		석사		
LAW6159	토지행정법론	3	3		석사		
LAW6163	행정입법연구	3	3		석사		
LAW6164	국가배상법연구	3	3		석사		
LAW6165	입법과정론	3	3		석사		
LAW6166	신문방송법연구	3	3		석사		
LAW6167	헌법논증방법론	3	3		석사		
LAW6168	에너지법연구	3	3		석사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이수대상	원어강의	비고
LAW6169	국제환경법연구	3	3		석사		
LAW6180	국제법일반이론	3	3		석사		
LAW6183	국제기구법연구	3	3		석사		
LAW6184	국제인권법연구	3	3		석사		
LAW6192	국제분쟁해결법연구	3	3		석사		
LAW6195	국제경제법연구	3	3		석사		
LAW6196	EU법연구	3	3		석사		
LAW6197	WTO법연구	3	3		석사		
LAW6216	민사소송증거론	3	3		석사		
LAW6240	노동법일반이론	3	3		석사		
LAW6241	사회보장법일반이론	3	3		석사		
LAW6244	개별적노동관계법연구	3	3		석사		
LAW6246	비교노동법일반연구	3	3		석사		
LAW6248	노동법판례연구	3	3		석사		
LAW6252	노동시장법일반연구	3	3		석사		
LAW6270	범죄수사법일반이론	3	3		석사		
LAW6274	현대범죄연구	3	3		석사		
LAW6278	범죄심리학연구	3	3		석사		
LAW6302	인터넷법연구	3	3		석사		
LAW6303	전자거래법연구	3	3		석사		
LAW6304	인터넷과개인정보법제연구	3	3		석사		
LAW6307	정보공개법연구	3	3		석사		
LAW6312	인터넷법제판례연구	3	3		석사		
LAW6313	개인정보법제판례연구	3	3		석사		
LAW6331	부동산담보법연구	3	3		석사		
LAW6332	부동산임대차와법	3	3		석사		
LAW6333	부동산거래와법	3	3		석사		
LAW6336	부동산중개업법연구	3	3		석사		
LAW6340	부동산공법연구	3	3		석사		
LAW6341	부동산판례연구	3	3		석사		
LAW6360	국제금융법일반이론	3	3		석사		
LAW6380	스포츠법일반이론	3	3		석사		
LAW6383	스포츠산업법연구	3	3		석사		
LAW6384	스포츠와노동법	3	3		석사		
LAW6386	엔터테인먼트법연구	3	3		석사		
LAW6389	공연예술법연구	3	3		석사		
LAW6410	지적재산권법일반이론	3	3		석사		
LAW6411	지적재산권법세미나	3	3		석사		
LAW6412	특허법연구	3	3		석사		
LAW6413	디자인보호법연구	3	3		석사		
LAW6414	상표법연구	3	3		석사		
LAW6415	저작권법연구	3	3		석사		
LAW6418	인터넷과지적재산권법	3	3		석사		
LAW6422	문화산업법연구	3	3		석사		
LAW6426	동양법제사연구	3	3		석사		
LAW6430	서양법제사세미나	3	3		석사		
LAW6464	형법세미나	3	3		석사		
LAW6517	과학수사론	3	3		석사		
LAW6519	범죄행동분석연구	3	3		석사		
LAW652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연구	3	3		석사		
LAW6530	NGO와법	3	3		석사		
LAW6531	국가정보법연구	3	3		석사		
LAW6532	난민과이민법연구	3	3		석사		
LAW6533	대테러법연구	3	3		석사		
LAW6534	미국경제간첩법연구	3	3		석사		
LAW6535	안보형사법연구	3	3		석사		
LAW6536	통일과법연구	3	3		석사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이수대상	원어강의	비고
LAW6537	국제형사법연구	3	3		석사		
LAW8001	법철학특수연구	3	3		박사		
LAW8003	법존재론연구	3	3		박사		
LAW8004	법인식론연구	3	3		박사		
LAW8005	논증이론	3	3		박사		
LAW8012	법사회학특수연구	3	3		박사		
LAW8013	법조사회학연구	3	3		박사		
LAW8030	헌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032	헌법사연구	3	3		박사		
LAW8035	경제헌법연구	3	3		박사		
LAW8036	기본권특수연구	3	3		박사		
LAW8038	정치기본권연구	3	3		박사		
LAW8040	통치기구특수연구	3	3		박사		
LAW8042	입법론연구	3	3		박사		
LAW8043	헌법재판특수연구	3	3		박사		
LAW8062	소멸시효론	3	3		박사		
LAW8065	소유권론	3	3		박사		
LAW8066	용익물권론	3	3		박사		
LAW8067	담보물권론	3	3		박사		
LAW8069	매매계약론	3	3		박사		
LAW8073	계약법판례연구	3	3		박사		
LAW8074	불법행위법판례연구	3	3		박사		
LAW8080	민사책임론	3	3		박사		
LAW8100	범죄체계론	3	3		박사		
LAW8103	양형론	3	3		박사		
LAW8107	형사소송구조론	3	3		박사		
LAW8108	수사절차법연구	3	3		박사		
LAW8109	형사증거법연구	3	3		박사		
LAW8110	상소제도론	3	3		박사		
LAW8112	소년사법제도론	3	3		박사		
LAW8130	상사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133	회사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134	회사지배구조연구	3	3		박사		
LAW8135	M&A연구	3	3		박사		
LAW8138	유가증권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146	주식회사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147	자본시장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148	보험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149	금융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150	미국통일상법전연구	3	3		박사		
LAW8150	미국통일상법전연구	3	3		박사		
LAW8151	사외이사제도연구	3	3		박사		
LAW8152	상사법통섭연구	3	3		박사		
LAW8153	해상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154	전자상거래법연구	3	3		박사		
LAW8155	정책과법연구	3	3		박사		
LAW8160	규제행정법론	3	3		박사		
LAW8162	행정법판례연구	3	3		박사		
LAW8163	지역개발행정법론	3	3		박사		
LAW8165	손실보상법론	3	3		박사		
LAW8166	공법상재판외분쟁해결절차연구	3	3		박사		
LAW8167	비교행정법연구	3	3		박사		
LAW8168	비교행정판례연구	3	3		박사		
LAW8170	행정쟁송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172	입법학연구	3	3		박사		
LAW8173	의료관계법연구	3	3		박사		
LAW8174	정치관계법연구	3	3		박사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실습	이수대상	원어강의	비고
LAW8190	국제판례연구	3	3		박사		
LAW8194	국제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195	국제인도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197	국제경제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200	국제환경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220	민사소송법판례연구	3	3		박사		
LAW8229	의료소송론	3	3		박사		
LAW8250	비교노동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251	비교사회보장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252	비교개별적노동관계법연구	3	3		박사		
LAW8254	사회보험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259	연금법세미나	3	3		박사		
LAW8263	비정규직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285	진술분석연구	3	3		박사		
LAW8290	형사정신감정학연구	3	3		박사		
LAW8295	수사심리학연구	3	3		박사		
LAW8311	생명유리법연구	3	3		박사		
LAW8312	방송통신법연구	3	3		박사		
LAW8330	부동산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331	부동산계약법연구	3	3		박사		
LAW8332	부동산권리분석연구	3	3		박사		
LAW8334	부동산민사특별법연구	3	3		박사		
LAW8337	부동산분쟁과법	3	3		박사		
LAW8341	부동산거래판례연구	3	3		박사		
LAW8343	부동산감정평가론	3	3		박사		
LAW8380	스포츠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381	스포츠중재법연구	3	3		박사		
LAW8382	스포츠계약법연구	3	3		박사		
LAW8383	스포츠보험법연구	3	3		박사		
LAW8384	스포츠에이전트법연구	3	3		박사		
LAW8386	게임산업법연구	3	3		박사		
LAW8387	영화영상법연구	3	3		박사		
LAW8390	음반산업법연구	3	3		박사		
LAW8394	국제스포츠법연구	3	3		박사		
LAW8410	지적재산권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411	특허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412	디자인보호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413	상표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414	저작권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416	신지적재산권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425	기술가치평가와기술이전연구	3	3		박사		
LAW8426	디지털광고법제연구	3	3		박사		
LAW8509	환경법연구	3	3		박사		
LAW8532	기억심리연구	3	3		박사		
LAW8534	프로파일링특수연구	3	3		박사		
LAW8536	목격증언연구	3	3		박사		
LAW8539	자백연구	3	3		박사		
LAW8540	북한인권법연구	3	3		박사		
LAW8541	사이버안전법연구	3	3		박사		
LAW8542	안보형사법특수연구	3	3		박사		
LAW8543	전쟁규범연구	3	3		박사		
LAW8544	테러리즘과정보연구	3	3		박사		
LAW8545	국제형사법특수연구	3	3		박사		

